

위 임 장

■ 대리인 참석 관련 정관

제33조(의사) ② 의원과 특별의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원으로 한다.

1. 위 임 자 (의원님)

업 체 명		성 명	
주 소	(회사)		
위임 사유		전화번호	

2. 수 임 자 (대리인)

성 명		직 위	
주 소	(회사)		
위임자와의 관계		전화번호	

3. 위임사항

충남북부상공회의소 2021년도 임시의원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

※ 본 위임장은 대리 참석시에만 작성하시어 회의 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은 상기 수임자(대리인)에게 위의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.

2021년 4월 일

위임자 _____ (서명)